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박주용 의원 대표발의]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230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. 1. 27.

발의의원 : 박주용 의원,  
신달호 의원, 최재규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)
- 라. 조례에 적용받는 지원대상과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)
- 마.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과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6조, 제7조)
- 바.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8조)

## 3. 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활용품”이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.
2. “재활용품 수집인”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활용품 수집인(이하 “수집인”이라 한다)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)**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대상)**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65세 이상인 사람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
3.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의 구체적 기준은 연령, 가구원의 소득, 재산, 부양가족 수,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내용)**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야광조끼,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
2.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환수)**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2.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3. 지급받기 위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

**제8조(교육)**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